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수직 설비배관이 각 층을 관통할 경우, 위·아래 층으로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하여 층간 방화구획을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, 반도체공장은 수직 배관이 크고 그 수가 많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

이에 따라,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반도체공장 건축물에서 설비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전용부분으로서,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·평가를 거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고,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은 층간 방화구획 적용을 완화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반도체공장 건축물에서 설비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전용부분으로서,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
가.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·평가를 거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

나.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것

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63조의5에서 “건축자재등””을 “제63조의5에서 “건축자재등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방화구획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) 제46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

적용한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의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2.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(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)
3.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(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)
4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·인가·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(방화구획 등의 설치) ① (생 략)	제46조(방화구획 등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 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 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 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9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<u>관한 법률</u> 」 제8조에 따라 성 <u>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반</u> <u>도체공장 건축물에서 설비배</u> <u>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</u> <u>전용부분으로서, 다음 각 목의</u> <u>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</u> 가. <u>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</u> <u>검토·평가를 거쳐 같은</u> <u>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</u> <u>스프링클러설비등 자동식</u> <u>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</u> <u>것</u> 나. <u>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</u> <u>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</u> <u>것</u>

③ ~ ⑦ (생 략) 제63조의2(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)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“방화문,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”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(이하 제63조의4 및 제63조의5에서 “건축자재등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 1. ~ 4.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 제63조의2(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 63조의5에서 “건축자재등”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992